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0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박환희, 강석주, 구미경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
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
송경택, 송도호, 신동원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
이종태, 장태용, 정지웅,
최민규, 최윤희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는 경우, 시장 및 교육감이 해당 조례의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, 조례와 예산을 연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함.(안 제55조의2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.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(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)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(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)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